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1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1월 26일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

나.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장 권한의 사무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제1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제2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별표 1)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현 명 속

○ 본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임.

○ 검토 결과,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시장 권한의 사무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